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6. 12.

제 안 자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 이유

수도요금의 과도한 인상율로 인해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시민들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요금을 인상코자 하였음

2. 수정 주요내용

- 안 [별표2]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에서 요금 적용을 수정안 별지와 같이 하향 조정하고
- 부칙 ②적용례에서 홍보기간 등의 필요성으로 2007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토록 하였음

3. 참고 사항

- 「지방자치법」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수도법」 제23조(공급규정)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②(적용례) 중 “ 2007년 1월 ” 을 “ 2007년 2월 ” 로 한다

[별표2]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조례 제29조 관련)

(단위: 원)

업종별	단 계 별	요 금
가정용	0 ~ 20m ³ (1단계)	300
	21 ~ 30m ³ (2단계)	430
	31 m ³ 이상 (3단계)	720
일반용	0 ~ 100m ³ (1단계)	520
	101 ~ 300m ³ (2단계)	730
	301 ~ 1,000m ³ (3단계)	830
	1,001 ~ 2,000m ³ (4단계)	970
	2,001 m ³ 이상 (5단계)	1,090
육탕용	0 ~ 1,000m ³ (1단계)	900
	1,001 ~ 1,500m ³ (2단계)	990
	1,501 ~ 2,000m ³ (3단계)	1,100
	2,001m ³ 이상 (4단계)	1,160
전 용 공업용	계약m ³ 당	280
	초과m ³ 당	390
※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m ³ 당 요금임. ※ 조례 제47조의 상수도 시설 훼손, 제39조의 일시급수의 경우 일반용 최고 요율 적용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2]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조례 제29조 관련) (단위: 원)				[별표2]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조례 제29조 관련) (단위: 원)			[별표2]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조례 제29조 관련) (단위: 원)		
업종별	단계별	요금	비고	업종별	단계별	요금	업종별	단계별	요금
가정용	0 ~ 20㎥ (1단계)	280		가정용	0 ~ 20㎥ (1단계)	340	가정용	0 ~ 20㎥ (1단계)	300
	21 ~ 30㎥ (2단계)	390			21 ~ 30㎥ (2단계)	510		21 ~ 30㎥ (2단계)	430
	31 ㎥ 이상 (3단계)	720			31 ㎥ 이상 (3단계)	710		31 ㎥ 이상 (3단계)	720
일반용	0 ~ 100㎥ (1 단계)	460	조례 제46조 제3항 및 제47조, 제49조의 일시 급수의 경우 최고 요금 적용	일반용	0 ~ 100㎥ (1 단계)	520	일반용	0 ~ 100㎥ (1 단계)	520
	101 ~ 300㎥ (2단계)	640			101 ~ 300㎥ (2단계)	720		101 ~ 300㎥ (2단계)	730
	301 ~ 1,000 ㎥ (3 단계)	800			301 ~ 1,000 ㎥ (3 단계)	830		301 ~ 1,000 ㎥ (3 단계)	830
	1,001 ~ 2,000 ㎥ (4 단계)	900			1,001 ~ 2,000 ㎥ (4 단계)	960		1,001 ~ 2,000 ㎥ (4 단계)	970
	2,001 ㎥ 이상 (5단계)	990			2,001 ㎥ 이상 (5단계)	1,080		2,001 ㎥ 이상 (5단계)	1,090
욕탕용	0 ~ 1,000 ㎥ (1 단계)	890		욕탕용	0 ~ 1,000 ㎥ (1 단계)	900	욕탕용	0 ~ 1,000 ㎥ (1 단계)	900
	1,001 ~ 1,500 ㎥ (2 단계)	990			1,001 ~ 1,500 ㎥ (2 단계)	980		1,001 ~ 1,500 ㎥ (2 단계)	990
	1,501 ~ 2,000 ㎥ (3 단계)	1,090			1,501 ~ 2,000 ㎥ (3 단계)	1,070		1,501 ~ 2,000 ㎥ (3 단계)	1,100
	2,001 ㎥ 이상 (4 단계)	1,150			2,001 ㎥ 이상 (4 단계)	1,160		2,001 ㎥ 이상 (4 단계)	1,160
전 용	계약 ㎥ 당	250		전 용	계약 ㎥ 당	280	전 용	계약 ㎥ 당	280
공업용	초과 ㎥ 당	381		공업용	초과 ㎥ 당	390	공업용	초과 ㎥ 당	390
				※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당 요금임 ※ 조례 제47조의 상수도 시설 훼손, 제49조의 일시 급수의 경우 일반용 최고 요금 적용			※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당 요금임 ※ 조례 제47조의 상수도 시설 훼손, 제49조의 일시 급수의 경우 일반용 최고 요금 적용		

현행	개정안	수정안
부 칙 ① (생략) <u>〈신 설〉</u>	부 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적용례) 이 조례 제29조제1항의 개정 요율은 <u>2007년 1월</u>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u>2007년 2월</u> -----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관할지역 이외 지역 중 칠곡군(제3공단 일부포함), 김천시 일부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시장은”으로 하고, 제2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삭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중 “토지의 처분에 부수 한다.”를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의 변동에 따른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중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3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5항의 1가구 및 1호 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처에 실제 거주 사용하는 가정용 사용자를 말한다.

제4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를 삭제한다.

4. 천재지변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부정수도 사용량 산출방법은 규칙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다.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급수를 도용한 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수도요금 추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동일세대를 포함한다)로 급수장치를 신설할 수 없다.

제5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수수료·과태료·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29조제1항의 개정 요율은 2007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2]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조례 제29조 관련)

(단위 : 원)

업종별	단 계 별	요 금
가정용	0 ~ 20m ³ (1단계)	300
	21 ~ 30m ³ (2단계)	430
	31 m ³ 이상 (3단계)	720
일반용	0 ~ 100m ³ (1단계)	520
	101 ~ 300m ³ (2단계)	730
	301 ~ 1,000m ³ (3단계)	830
	1,001~2,000m ³ (4단계)	970
	2,001 m ³ 이상 (5단계)	1,090
욕탕용	0 ~ 1,000 m ³ (1단계)	900
	1,001~1,500m ³ (2단계)	990
	1,501~2,000m ³ (3단계)	1,100
	2,001m ³ 이상 (4단계)	1,160
전 용 공업용	계약m ³ 당	280
	초과m ³ 당	390

※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m³당 요금임.

※ 조례 제47조의 상수도 시설 훼손, 제 39조의 일시급수의 경우 일반용 최고 요금 적용

【별표3】

업 종 별 구 분 표 (조례 제30조 관련)

업종별	구 분 내 역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 등의 소매점 및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노인)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 신문보급소, 지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 및 지압업소 • 공동주택 단지내 관리사무소·경비실·공동 화장실·노인정·운동시설(영업행위를 하는 운동시설 제외) 등에 대한 급수
일반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은 모든 급수 • 임시급수(최종단계 효율적용)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량 (최종단계 효율적용)
욕탕용	• 목욕장업(「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필한 목욕장) 단, 바닥면적(탈의실, 욕실, 욕조포함)이 330㎡이하인 목욕장은 일반용
전 용 공업용	•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별도 설치한 전용관에 의한 급수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 (조례 제35조 관련)

구경별	요 금	비 고
13 mm	910	
20 mm	2,550	
25 mm	4,110	
32 mm	7,300	
40 mm	12,330	
50 mm	18,910	
80 mm	52,610	
100 mm	78,190	
150 mm	170,360	
200 mm	241,980	
250 mm	326,390	
300 mm	393,630	
350 mm	495,480	
400 mm	539,240	
500 mm	687,680	
500mm이상	1,123,430	
※ (공동주택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조례 제35조제4항 각호 적용)		

【별표 6】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조례 제48조 관련)

위 반 내 용	과 태 료		행 정 처 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자	공공시설물을 부정 사용한자	
1. 급수 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단, 가정용은 3배	200,000원	• 부정 급수 철거 명령 •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신설에 한함)		200,000원	• 부정 급수 철거 명령 • 부정공사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3. 계량기작동 방해·훼손, 무단 철거 및 망실		50,000원	• 계량기수리 및 구입설치 명령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4. 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50,000원 단 가정용은 30,000원	• 원상 복구명령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가압시설		200,000원	•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명령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6. 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100,000원	•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과태료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7.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단, 가정용은 3배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8. 제22조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 금지위반	• 판매금액의 5배 • 단, 가정용은 3배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 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치 않을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9. 업종 위반			• 업종 위반일로부터 기산하여 추정·업종 직권 변경 • 추정금을 납부기간내 미납부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위반 내용 부정급수자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수도관을 승인 없이 연결하여 무단 사용한 자의 경우 구경별 출수량을 적용한다. 단, 구경별 출수량은 조례 시행규칙 별표 1구경별 출수 수량표, 별표 2]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구미시의 관할 구역중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u>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u>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u>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u>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중수도 설치 대상등) ① ~ ②(생략) ③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생략) 제21조(신고) ①수도 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7.(생략) 8.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생략)	제3조(급수구역) ----- ----- ----- ----- 다만,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 중 칠곡군(세종단 일 부 포함), 김천시 일부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 시장은 ----- ----- -----.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 게 할 수 있다. 제9조(중수도 설치 대상등) ①~ ②(현행과 같음) ③(삭제) ④(현행과 같음) 제21조(신고) ①----- ----- ----- 1. ~ 7.(현행과 같음) 8.(삭제) ②(현행과 같음)	• 규제개혁 추진 지침에 의한 문구 수정 • 규제개혁 추진 지침에 의한 문구 수정 • 규제개혁 추진 지침에 의한 문구 수정 • 규제개혁 추진 지침에 의한 문구 수정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2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하여는 이를 승계한다. ③(생략)	제2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의 변동에 따른다. ②(삭제) ③(현행과 같음)	• 규제개혁 추진 지침에 의한 문구 수정
제30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30조(업종의 구분) ①----- ----- ----- ----- -----규칙으로 정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규제개혁 추진 지침에 의한 문구 수정
제32조(사용량의 인정) ① ~ ③(생략) ④ 제5항의 2가구 및 2호 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처에 실제 거주 사용 하는 자를 말한다. ⑤ ~ ⑥ (생략)	제32조(사용량의 인정)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 1가구 및 1호 ----- ----- -----가정용 사용자를 말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 검 업종 가구분할의 경우 가정용 1 가구에 대 하여도 확대 적용
제41조(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 ①(생략) 1. ~ 3.(생략) 4. 천재지변등 공익상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 6. (생략) 7. 기타 공익상 특별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8.(생략) ②(생략)	제41조(요금 등의 감면 및 지원) ①(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천재지변 5. ~ 6.(현행과 같음) 7.(삭제) 8.(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 규제개혁 추진 지침에 의한 문구 수정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48조(과태료 및 행정처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2. ~ 3.(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신설) (신설)	제48조(과태료 및 행정처분) ①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부정수도 사용량 산출방법은 규칙 제 26조의 2 규정에 의한다. 1.(삭제) 2. ~ 3.(현행과 같음) ②(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급수를 도용한 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수도요금 추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동일세대를 포함한다)로 급수장치를 신설할 수 없다.	• 규제개혁 추진 지침에 의한 문구 수정 • 과태료부과에 따른 행정절차 규정 • 과태료부과에 따른 행정절차 규정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51조(이의 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생략) (신설) (신설)	제51조(이의 신청) ①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과태료·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③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개정 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조정 • 이의 신청 에 따른 행정절차 규정

현행				개정안		
[별표2]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조례 제29조 관련)				[별표2]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조례 제29조 관련)		
(단위: 원)				(단위: 원)		
업종별	단계별	요금	비고	업종별	단계별	요금
가정용	0 ~ 20㎥ (1단계)	280		가정용	0 ~ 20㎥ (1단계)	300
	21 ~ 30㎥ (2단계)	390			21 ~ 30㎥ (2단계)	430
	31 ㎥ 이상 (3단계)	720			31 ㎥ 이상 (3단계)	720
일반용	0 ~ 100㎥ (1단계)	460	조례 제46조 제3항 및 제47조, 제49조의 일시급수의 경우 최고요금 적용	일반용	0 ~ 100㎥ (1단계)	520
	101 ~ 300㎥ (2단계)	640			101 ~ 300㎥ (2단계)	730
	301 ~ 1,000 ㎥ (3 단계)	800			301 ~ 1,000 ㎥ (3 단계)	830
	1,001 ~2,000 ㎥ (4 단계)	900			1,001 ~2,000 ㎥ (4 단계)	970
	2,001 ㎥ 이상 (5 단계)	990			2,001 ㎥ 이상 (5 단계)	1,090
욕탕용	0 ~ 1,000 ㎥ (1 단계)	890		욕탕용	0 ~ 1,000 ㎥ (1 단계)	900
	1,001 ~1,500 ㎥ (2 단계)	990			1,001 ~1,500 ㎥ (2 단계)	990
	1,501 ~2,000 ㎥ (3 단계)	1,090			1,501 ~2,000 ㎥ (3 단계)	1,100
	2,001 ㎥ 이상 (4 단계)	1,150			2,001 ㎥ 이상 (4 단계)	1,160
전 용 공업용	계약 ㎥ 당	250		전 용 공업용	계약 ㎥ 당	280
	초과 ㎥ 당	381			초과 ㎥ 당	390
				※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당 요금임. ※ 조례 제47조의 상수도 시설 훼손, 제 39조의 일시급수의 경우 일반용 최고요금 적용		

현행		개정안	
【별표3】 업종별 구분표(조례 제30조 관련)		【별표3】 업종별 구분표(조례 제30조 관련)	
업종별	구분내역	업종별	구분내역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 등의 소매점 및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 신문보급소, 지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 및 지압업소 (신설)	가정용	----- ----- ----- ----- ----- ----- 사회(노인)복지시설 ----- ----- - 공동주택 단지내 관리사무소 경비실·공동 화장실 노인정 운동시설(영업 행위를 하는 운동시설 제외)등에 대한 급수
일반용	타 업종에 속하지 않은 모든 급수 (신설) (신설)	일반용	----- - 임시급수(최종단계 효율적용)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량 최종단계 효율적용)
욕탕용	목욕장업(「공중위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필한 목욕장) 단, 바닥면적 300㎡ 이하인 목욕장은 일반용	욕탕용	----- ----- ----- 330㎡ -----
전용 공업용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별도 설치한 전용관에 의한 급수	전용 공업용	----- -----

현행			개정안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 (조례 제35조 관련)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 (조례 제35조 관련)		
구경별	요금	비고	구경별	요금	비고
13 mm	<u>900</u>		13 mm	<u>910</u>	
20 mm	<u>2,520</u>		20 mm	<u>2,550</u>	
25 mm	<u>4,040</u>		25 mm	<u>4,110</u>	
32 mm	<u>7,180</u>		32 mm	<u>7,300</u>	
40 mm	<u>12,110</u>		40 mm	<u>12,330</u>	
50 mm	<u>18,580</u>		50 mm	<u>18,910</u>	
80 mm	<u>51,640</u>		80 mm	<u>52,610</u>	
100 mm	<u>76,810</u>		100 mm	<u>78,190</u>	
150 mm	<u>167,310</u>		150 mm	<u>170,360</u>	
200 mm	<u>237,590</u>		200 mm	<u>241,980</u>	
250 mm	<u>319,480</u>		250 mm	<u>326,390</u>	
300 mm	<u>386,500</u>		300 mm	<u>393,630</u>	
350 mm	<u>484,750</u>		350 mm	<u>495,480</u>	
400 mm	<u>528,810</u>		400 mm	<u>539,240</u>	
500 mm	<u>622,420</u>		500 mm	<u>687,680</u>	
500mm이상	<u>1,002,500</u>		500mm이상	<u>1,123,430</u>	
※ (공동주택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조례 제35조 제4항 각호 적용)					

현행					개정안				
【별표 6】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조례 제48조 관련)					【별표 6】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조례 제48조 관련)				
위반내용	과태료			행정처분	위반내용	과태료		행정처분	
	조례 제48조 제1항 제1호	조례 제48조 제1항 제2호	조례 제48조 제1항 제3호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자	공공시설물을 부당 사용한 자		
1. 급수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100,000원		· 부정급수 철거명령 ·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1. 급수도용		200,000원	(현행과 같음)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신설에 한함)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200,000원	· 장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부정급수 철거명령 · 부정급수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신설에 한함)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가정용은 3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계량기 작동 방해·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50,000원		· 계량기 수리 및 구입설치 명령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3. 계량기 작동 방해·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 파손		50,000원		· 원상 복구명령 · 봉인 파손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4. 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 파손		50,000원 단, 가정용은 30,000원	· 원상 복구명령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 시설		200,000원	200,000원	· 철거 또는 허가철거 이행명령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 시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시설 소화전의 무단 사용 또는 봉인 파손		100,000원		·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과태료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6. 시설 소화전의 무단 사용 또는 봉인 파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정수처분 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00,000원		· 중전 처분에 따른 의무 및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7. 정수처분 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가정용은 3배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현행과 같음)	
8. 제22조 규정에 의한 급수 판매금지 위반	· 판매금액의 5배	50,000원		· 과태료를 납부 기간 내 납부치 않을 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8. 제22조 규정에 의한 급수 판매금지 위반	· 판매금액의 5배 · 가정용은 3배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현행과 같음)	
9. 업종위반				· 업종 위반일로부터 기산하여 추정 업종 직권변경 · 추정급수를 납부기간 내 매납부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9. 업종위반			(현행과 같음)	
※ 1개의 행위가 조례 제 48조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5호의 처분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위에 정한 기준 중 그 벌이 중한 쪽 적용 ※ 위반내용 부정급수자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무단 급수공사의 경우 구경별 출수량을 적용한다. 단, 구경별 출수량은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구경별 출수 수량표, 별표 2]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생활용수의 1일 사용시간은 8시간으로 하고, 공업용수 등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장가동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위반 내용 부정급수자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수도관을 승인 없이 연결하여 무단사용한 자의 경우 구경별 출수량을 적용한다. 단, 구경별 출수량은 조례 시행규칙[별표] 구경별 출수 수량표, 별표 2]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